

산업안전보건법령 요지

(2024.1.1. 기준)

순번	산업안전보건법	주요내용	벌칙
1	제14조(이사회 보고 및 승인 등)	○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회사 및 공사순위 상위 1천위 이내의 건설회사의 대표이사는 매년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 보고 승인 ○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비용, 시설, 인원 등의 사항 포함	1,000만원 이하 과태료
2	제15조(안전보건관리책임자)	○ (해당시)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해당 사업장 안전보건업무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선임	500만원 이하 과태료
3	제16조(관리감독자)	○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 및 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○ 기계, 기구 및 설비의 안전보건점검, 작업복 보호구 방호장치의 착용, 점검 및 교육 등 업무 수행	각 500만원 이하 과태료
4	제17조(안전관리자) 제18조(보건관리자) 제19조(안전보건담당자)	○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 조언 하는 업무를 수행	각 500만원 이하 과태료
5	제24조(산업안전보건위원회)	○ (해당시)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위해 근로자 및 사용자위원을 동수로 구성하여 운영	500만원 이하 과태료
6	제25조(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)	○ (해당시)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등을 작성 (작성 의무 대상 :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)	500만원 이하 과태료
7	제29조(안전·보건 교육)	○ 정기교육, 채용시 및 작업내용변경시교육, 특별교육, 건설업 기초안전보건 교육,관리감독자 교육 등	500만원 이하 과태료
8	제32조(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)	○ (해당시)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, 안전관리자, 보건관리자, 안전보건관리담당자, 관련 기관에서 안전과 보건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직무와 관련한 안전 보건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함	500만원 이하 과태료
9	제34조(법령 요지 등의 게시 등)	○ 산업안전보건법 요지 및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게시 (근로자들이 알기 쉽게 게시)	500만원 이하 과태료
10	제36조(위험성 평가의 실시)	○ 당 작업장의 근로자 참여하여 사업장의 위험요인을 찾아내어 평가하고 법에 따른 조치를 하고 기록 보존 실시 ○ 위험성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3년간 기록보존	관리책임자, 관리감독자 직무 미이행 각 500만원이하 과태료
11	제37조(안전표지의 설치 부착등)	○ 사업장의 유해 또는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경고, 비상시 조치 안내 등의 안전보건 표지 설치 및 부착 하여야 한다 ○ 외국인 근로자 사용자 근로자의 모국어로 안전보건표지를 작성 하여 설치 하여야 한다(금지/경고/안내/지시)	500만원 이하 과태료 (1개소당 10/30/50만원)
12	제38조(안전조치)	○ 사업주는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	사망시 7년이하 징역 및 1억원이하 벌금
13	제39조(보건상의 조치)	○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	사망시 7년이하 징역 및 1억원이하 벌금
14	제41조(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)	○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고객응대근로자 등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실시	1,000만원 이하 과태료
15	제51조(사업주의 작업중지)	○ 산업재해가 발생한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즉시 작업 중지 및 근로자 대피 등 안전·보건 조치	5년 이하 징역 또는 5,000만원 이하 벌금
16	제52조(근로자의 작업중지)	○ 근로자는 급박한 위험의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음 ○ 작업을 즉시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는 지체 없이 관리감독자에게 보고하고, 보고 받은 관리감독자는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 후 작업을 재개함 ○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에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함	-
17	제54조(중대재해발생시 사업주의 조치)	○ 중대재해 발생 시 즉시 해당 작업 중지 및 전화, 팩스 또는 그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지체없이 관할 지방 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	3,000만원 이하의 과태료
18	제57조(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)	○ 산업재해 발생 보고 ※ 재발방지계획서 등 작성 3년 보관 -사망 시: 지체 없이 전화 및 팩스 보고(고용노동부 관할지청) -3일 이상의 휴업재해 발생 시: 관할지청에 1달이내 산업재해조사표 보고	· 은폐: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· 보고: 1500만원 이하 과태료
19	제58조(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)	○ 도급작업, 수은·납·카드뮴 제련·주입·가공·가열 작업 도급금지 ○ 허가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 도급금지	10억원 이하의 과징금
20	제63조(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)	○ 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 사업장에서 작업 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함 ○ 단,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수급인 근로자의 작업 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	근로자 사망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등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
21	제64조 (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)	○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○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 제공 지원 및 교육 실시 확인 ○ 수급인이 실시하는 특별교육 결과의 확인 ○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, 위생시설 설치 및 이용의 협조 ○ 작업장 순회점검, 합동점검 실시 ○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에 있어서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·내용,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의 확인 및 위험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시기·내용등의 조정	500만원 이하 벌금
22		○ 위생시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가 이루어 지지 않은 경우	1500만원 이하 과태료
23	제65조(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등)	○ 도급인은 해당 작업 시작 전에 수급인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하고 안전조치 여부를 확인 ○ 화학물질을 제조·사용·운반 또는 저장하는 설비를 개조·분해·해체 또는 철거하는 작업 ○ 반응기, 증류탑, 배관, 저장탱크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○ 질식 또는 붕괴의 위험이 있는 작업	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,000만원 이하의 벌금
24	제66조(도급인의 관계 수급인에 대한 시정조치)	○ 도급인이 수급인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	500만원 이하 과태료
25	제73조(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)	○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이 직접 건설 산업재해 예방 지도계약을 직접 체결하여 건설 산업재해 예방 지도 기관으로부터 지도를 받지 않은 경우	500만원 이하 과태료
26	제75조(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등의 구성·운영)	○ 노사협의체를 구성·운영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각각 구성·운영하는 것으로 인정 (1회/2개월)	500만원 이하 과태료
27	제77조(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)	○ 특수형태근로종사자 : 건설기계(27종) 운전원 해당 ○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 및 보건조치를 해야함 ○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 : 2시간 (단기간/간헐적 시 1시간, 특별교육 시 면제) ○ 특별교육 : 16시간 (최초 종사 전 4시간, 3개월 이내 12시간 분할 교육) : 단기간/간헐적 작업은 2시간	-안전보건 조치 1천만원 이하 과태료 -교육 500만원 이하 과태료